

이행(하자)보증보험 상품요약서

가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□ 가입자격제한

-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우리회사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□ 상품의 특이사항

- 보험상품 내용 :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위하여 납부하는 하자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.
- 보험계약자 :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의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합니다.
- 보험기간 :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. 다만 관계 법령,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,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.
- 보험가입금액 :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(피보험자)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.

나.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

□ 보험금 지급사유

- 채무자(보험계약자)가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(피보험자)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
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

- 피보험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
-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테러, 폭동,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
- 지진, 분화, 홍수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
- 핵연료물질(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(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)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

다.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

□ 보험료의 구성

-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『순보험료』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예정이익에 해당하는 『부가보험료』로 구성됩니다.
- 보험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, 보험가입금액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즉, 적용보험요율은 각 보험상품별 기본요율에 특별약관요율, 할인·할증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보험요율을 의미합니다.

□ 기본요율

- 기본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 및 보증내용에 따라 연 0.065%~1.359% 차등 적용됩니다.

□ 보험료 산출예시

-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피보험자가 발주한 건설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금 1,000만원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$$\text{보험가입금액} \times \text{적용요율} = \text{납입보험료}$$

$$1,000\text{만원} \times 0.706\% \times 2\text{년} = 141,200\text{원}$$

※ 할인·할증률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.

라.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

- 무배당상품이므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마.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-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바. 상품별 중요사항 FAQ

□ 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

- ☞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양식인 보험 상품별 보증보험 청약서와 약정서, 주계약서 및 명판, 인장, 사업자 사본등 계약자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이외에도 보험 상품 및 보증내용의 종류와 보험가입금액 대소 등 개별적인 청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항은 발급예정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.

□ 보험료 환급 절차와 구비서류

- ☞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우리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☞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피보험자의 환급사유확인서(대출금상환확인서, 계약이행완료확인서 등)
 -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 - 계약자 인장이 날인된 환급청구서 및 환급계산서(당사 소정양식)
 - 계약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, 해당 인감의 인감증명서(대리인(법인담당자포함)방문시)

□ 주계약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방법은?

- ☞ 각종 계약체결시, 주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외화로 표시하여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외화로 표시된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보험료영수, 환급 및 보험금 지급시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[환율적용 특별약관]이 첨부됩니다.

□ 이행(하자)보증보험의 보상절차 및 보상범위

- ☞ 이행(하자)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발급지점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 청구하면 당사는 해당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- ☞ 이행(하자)보증보험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(보완)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, 지급할 보험금은 하자보수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(보험가입금액 한도)

**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
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**